

16. 세인트루시아 (Saint Luc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가입자(자영자) 5% 사용자 5% (질병, 출산, 산재급여 재원 병행)	가입자(자영자) 5% 사용자 5% (질병, 출산, 의료, 산재급여 재원 병행)	의료급여 재원 병행 추가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80개월	180개월	-
노령연금 지급률 (180개월 기준)	가입자 평균소득 40%	가입자 평균소득 40%	-
일시금	보험료 납부기간 1개월 당 연평균소득의 0.67%를 지급	보험료 납부기간 1개월 당 연평균소득의 0.67%를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0년(적립기금) 및 1978년(사회보험, 1979년 시행)
- 현행법 : 2000년(국가보험공단), 2003년(국가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근로자, 자영자, 견습생
 - 임의적용(노령급여에 한정) : 고용되지 않은 자
 - 특별제도 : 2003년 2월 1일 이전에 고용된 공무원

- 가입자 : 월 적용소득의 5%
 - 임의가입자는 규정된 임금 구간에 따른 기준소득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소득 상한액 : EC\$60,000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자영자 : 규정된 임금 구간에 따른 기준소득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액은 EC\$50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소득 상한액은 EC\$60,000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,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사용자 : 월 급여지급 총액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소득 상한액은 EC\$60,000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정부 : 없음;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65세 도달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60세 도달.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노령연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 - 노령일시금
 -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미만, 65세 도달
 - 노령일시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급여
 - 장애연금
 - 정상 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경우 지급
 - 산업재해로 기인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30% 이상 상실된 것으로 판정
 - 장애 발생 전 36개월의 연속기간을 포함하여 6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, 총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
 - 현금 질병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어야 함

- 등록된 의사가 최소 2년마다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심사함
- 장애연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일시금
 - 정상 연금 수급연령 미만
 - 산업재해로 기인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30% 미만 상실된 것으로 판정
 - 현금 질병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어야 함
 - 장애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 미충족
 - 등록된 의사가 장애정도를 심사함
 - 장애일시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사망 시점에 사망자가 노령/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경우
 - 수급가능 유족 : 가입자와 3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, 16세(정규 학생인 경우 18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피부양 고아. 기타 유족이 없을 경우 고령인 피부양 부모 및 조부모
 - 유족배우자연금은 재혼 및 동거 시 중단됨
 - 유족연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
 - 사망 시점에 사망자가 노령/장애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- 유족일시금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제비
 - 사망자가 사망 시점에 노령/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사망 직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의 납부기간(자영자는 12개월)이 있거나 보험료 납부액이 급여액(최대 EC\$2,500)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
 -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 또는 배우자나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
 - 장제비는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가입자 평균소득의 40%에 180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 당 평균소득의 0.1%씩 추가
 - 가입자 평균소득 : 연소득 EC\$60,000을 상한으로, 가입자 최고 소득 5년 동안의 적용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 - 월 최저 노령연금 : EC\$300
 - 월 최대 노령연금 : 가입자 평균 가입소득의 60%
 - 조기연금 : 연금액은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청구하는 1개월 당 0.5%씩 감액
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

- 노령일시금
 - 1979년 3월 후 보험료 납부기간 1개월 당 연평균소득의 0.67%를 지급
 - 구적립기금제도에 가입된 자는 적립기금 잔액 100%에 이자가 가산된 일시금도 수급
 - 가입자 평균소득 : 연소득 EC\$60,000을 상한으로, 가입자 최대 소득 5년 동안의 적용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 - 세인트루시아는 1979년 4월부터 적립기금제도를 사회보험제도로 대체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자 평균소득의 35% 지급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자 평균소득의 40%에 180개월을 초과하는 납부기간 1개월 당 평균소득의 0.1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가입자 평균소득 : 연소득 EC\$60,000을 상한으로, 가입자 최대 소득 5년 동안의 적용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 - 월 최저 장애연금 : EC\$300
 - 월 최대 장애연금 : 가입자 평균소득의 60%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중지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
- 장애일시금
 - 1979년 3월 후 보험료 납부기간 1개월 당 연 평균소득의 0.67%를 지급
 - 구적립기금제도에 가입된 자는 적립기금 잔액 100%에 이자가 가산된 일시금도 수급
 - 가입자 평균소득 : 연소득 EC\$60,000을 상한으로, 가입자 최대 소득 5년 동안의 적용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 - 세인트루시아는 1979년 4월부터 적립기금제도를 사회보험제도로 대체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유족배우자연금 : 다른 유족이 없다면,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/장애연금의 75%를 배우자에게 1년간 지급(5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평생 지급) ; 다른 피부양 유족이 있다면 50%를 1년간(5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평생 지급) 또는 최연소 고아가 16세(정규 학생인 경우 18세) 도달 시까지 지급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/장애연금의 50%를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에게 지급 ; 완전고아인 경우 각 부모가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/장애연금의 50%를 지급
 - 기타 피부양자 유족연금 :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/장애연금의 50%를 1년간 고령의 피부양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지급(조기 퇴직연령 도달시 평생 지급)
 - 최대 유족연금 합산 총액은 사망자가 받았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/장애연금의 100%임
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

- 유족일시금
 - 적어도 사망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령일시금/장애일시금 정도의 가치를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제비
 - 가입자는 최대 EC\$2,500, 배우자는 최대 EC\$2,150, 피부양 자녀는 연령에 따라 EC\$200에서 EC\$2,150까지의 금액이 장례비용으로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재정, 경제성장, 일자리 창출, 외무 및 공공서비스부
(Ministry of Finance, Economic Growth, Job Creation, External Affairs and the Public Service)
 - <http://finance.govt.lc/>
 - 전반적 감독
- 국가보험공단(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)
 - <http://www.stlucianic.org>
 - 국가보험위원회의 감독 하에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